

case
9

물티슈

요약

사례명	물티슈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
사례번호	NY N352216 (2025.09.08.)
사실관계	중국산 부직포 를을 한국으로 수입한 뒤, 베이스 시트 생산 및 한국산 독점 세정 용액을 함침하여 생산한 물티슈를 미국으로 수출
쟁점 및 판정	<p>①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</p> <p>최종 제품에 본질적 성격을 부여하는 구성 요소는 한국산 독점 세정 용액이며, 중국산 부직포 를은 단순히 이를 운반하는 운반체 역할을 담당하므로,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</p>
근거법령	-

I 판정사례

사례명 [물티슈]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목적의 원산지판정

사례번호 NY N352216 (2025.09.08.)

사실관계

요청자 Kimberly-Clark Global Sales, LLC (대리인: Sidley Austin LLP)

제품명	• Cottonelle® 플러셔블 물티슈
제품 구성	• 독점 세정 용액 • 부직포
용도	• 개인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습윤 처리된 일회용 물티슈

제조공정



상세공정 1. 중국산 부직포 룰을 한국으로 수입

2. 한국 제조 공정

- 부직포 룰을 절단하여 베이스 시트 생산
- 한국산 독점 세정 용액을 베이스 시트에 함침
- 절단, 압축 등의 공정 수행 후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

3. 미국 수출

쟁점사항

- ✓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 및 분석

관련 법령 검토

- ▣ 무역 구제 조치 및 추가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판정은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
 -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: 명칭(name), 성질(character), 용도(use)의 변화 여부

- ❖ 참고 판정: *CBP Ruling HQ H301619(2018.11.06.)*
- ❖ 참고 판례: *Texas Instruments v. United States, 681 F.2d 778, 782 (1982)*
- ❖ 참고 판례: *National Hand Tool Corp. v. United States, 16 C.I.T. 308 (1992), aff'd, 989 F.2d 1201 (Fed. Cir. 1993)*

판정 결과

- ▣ 최종 제품에 본질적 성격을 부여하는 구성 요소는 한국산 독점 세정 용액이며, 중국산 부직포 룰은 단순히 이를 운반하는 운반체 역할을 담당하므로,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

결론

- ✓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

II 시사점

- 세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의 경우,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는 세정 용액으로 판단되며, 이에 따라 해당 용액이 제조된 국가가 원산지국으로 판정됨

III 참고자료

- CBP Ruling NY N352216 (2025.09.08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52216>
- Texas Instruments, Inc. v. United States (1982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8163/texas-instruments-inc-v-united-states/?q=Texas+Instruments%2C+Inc.+v.+United+States>
- National Hand Tool Corp. v. United States (1993), 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737087/national-hand-tool-corp-v-united-states/?q=National+Hand+Tool+Corp.+v.+United+States&type=o&order_by=score+desc&stat_Published=on